

『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제238조 제2항 및 「구미시세조례」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 과세대상
 -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중 「지방세법」 제2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 : 34.745km²
 - 선산읍 : 5개리 1.440km²(동부, 이문, 죽장, 교리, 화조리 일부지역)
 - 고아읍 : 5개리 5.068km²(이레, 오로, 봉한, 향곡, 예강리 일부지역)
 - 해평면 : 7개리 8.185km²(낙성, 해평, 오상, 문량, 괴곡, 월호, 금호리 일부지역)
 - 산동면 : 7개리 17.370km²(동곡, 적림, 성수, 신당, 봉산, 임천, 인덕리 일부지역)
 - 장천면 : 4개리 2.682km²(상장, 하장, 묵어, 신장리 일부지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235조 제238조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95조
- 「구미시세조례」 제84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고시안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「지방세법」 제238조 제2항 및 「구미시세조례」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 중 「지방세법」 제2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이며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은 선산읍 5개리 1.440km², 고아읍 5개리 5.068km², 해평면 7개리 8.185km², 산동면 7개리 17.370km², 장천면 4개리 2.682km² 등 총 34.745km²임

○ 검토결과

-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선산읍 등 5개읍면 28개리 34.745km²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
- 상기 건은 구미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2004년도 완료 (구미시 고시 제2004-90호/ 2004. 12. 31)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3년간 유예시킨 사유와 부과의 타당성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